

1. 개정이유

‘전수교육조교’의 명칭을 ‘전승교육사’로 변경하고 ‘전승교육사’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404호, 2020.6.9.공포, 2020.12.10.시행)됨에 따라, 명칭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(안 제5조 등)

- “전수교육조교”의 명칭을 “전승교육사”로 변경함
-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

나.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(안 제9조)

- 시행령 안 제18조(전승교육사의 인정)가 개정됨에 따라 전승교육사 추천관련 인용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6조 단서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전수교육조교의 추천)”을 “(전승교육사의 추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육사”로, “영 제18조제2항”을 “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또는 보유단체”를 “,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“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”를 “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추천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
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“전수교육조교”를 각각 “전승교육사”로 한다.
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

국가무형문화재 명칭		제 호 (명칭)	☐ 보유자 ☐ 보유단체 ☐ 전승교육사	성 명 (서명 또는 인) (보유단체명)
전수 교육 세부 계획	1월			
	2월			
	3월			
	4월			
	5월			
	6월			
	7월			
	8월			
	9월			
	10월			
	11월			
	12월			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
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문 화 재 청 장 귀하

작성방법

※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, 장소, 교육내용,4교육시간, 전수교육 지도자(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), 대상자
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.

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

국가무형문화재 명칭		제 호 (명칭)	☐ 보유자 ☐ 보유단체 ☐ 전승교육사	성 명 (서명 또는 인) (보유단체명)
전수 교육 세부 실적	1월			
	2월			
	3월			
	4월			
	5월			
	6월			
	7월			
	8월			
	9월			
	10월			
	11월			
	12월			
전수교육 증명 자료(사진 등)				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
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문 화 재 청 장 귀하

첨부서류 및 작성방법
전수교육 증명자료(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) ※ 전수교육 증명자료(사진 등)로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※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, 장소, 교육내용, 교육방법, 교육시간, 전수교육 지도자(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 교육사),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보유단체, 명예보유자 또는 <u>전수교육조교</u> (이하 “보유자등”이라 한다)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(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</u> <u>승교육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) 보유자등의 인정서가 반납된 후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유자, 명예보유자 및 <u>전수교육조교</u>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6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전승교육사</u> ----- -----.
제8조(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	제8조(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

시)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,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(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, 소재지,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주소)

2. (생략)

제9조(전수교육조교의 추천)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

시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전승교육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전승교육사의 추천) ① -----
----- 전승교육사 -----

--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 --
----- 전승교육사 -----

--.

② -----
----- 전
승교육사 -----

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)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보유자,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: 별지 제3호서식
2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
제11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)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, 이 경우 “취소”는 “해제”로 본다.

- ② (생략)

제16조(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

-----.

-----전승교육사-----

-----.

제10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) ① -----

-----.

1. ----- 전승교육사 -----
-
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) ① -----

-----.

----- 전승교육사-----

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

보고서)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,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17조(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)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, <u>전수교육조교</u>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 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.	보고서) ----- ----- -----, <u>보유단체</u> 또는 <u>전승교육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17조(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) - ----- ----- <u>전승교육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